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363 제출연월일 : 2024. 7. 2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을 "조성 및 개발"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을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을 "(학교용지의 확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확보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며,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를학교용지확보기금이 승계한 경우에는 학교용지확보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액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잔액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잔액 부족 등 부득이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제3조(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분양공고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예탁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교육감이 설치·운용하는 학교용지확보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의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	제1조(목적)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	
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	<u>조</u>
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u>성 및 개발</u>
<u>부담</u>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	
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	<u><삭 제></u>
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	
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	
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	
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	
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	
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	
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	

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 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 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 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 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 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 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 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 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생략)
-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 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노인복지법」 제32
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
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
① (청체코 가야)
② (현행과 같음)
3

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제4조<u>(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u> 부담)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 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 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 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 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삭 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

-----.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 의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 <u>시·도 교육비특별</u> 회계에서 부담한다.

<u><삭 제></u>

⑥ ~ ⑧ (현행과 같음) <<u>삭 제></u> 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 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 호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 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 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 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 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 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 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 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한다.

-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 다.
-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 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 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 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 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 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 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 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 준으로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 <삭 제> ① 시 · 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 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 <삭 제>

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 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 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 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 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 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 다.

-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가 관 리·운용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

<삭 제>

수하는 부담금

-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가산금
- 3.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 로 정하는 재원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 되는 비용
-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 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
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한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부담할수 있다. 이 경우학교증축경비는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부담할수 있다. 이 경우학교증축경비는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가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삭 제>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 사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 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과대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 제9조(권한의 위임) <삭 제>

② (현행과 같음)<삭 제>